

시험 규정

1. 시험 일반 규정

· 시험 시간 및 입실 시간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90분이며,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지참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계산기>

· 응시자격 및 제한

자격제한은 없습니다.

· 합격유효기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입니다.

· 합격증발급

합격증발급은 실기시험 종료 후 약 2주일 내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2. 신분증 규정

아래 제시된 신분증 중 한 가지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며 그 외는 불가합니다.

구분	규정 신분증	대체가능 신분증
일반인, 대학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이전의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 주의 : 대학 학생증은 신분증 사용 불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학생증 (사진 부착한 포토아이디) ※ 주의 : 종이 학생증 불가
공무원		공무원증
군인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복무확인서, 신분확인증명서
외국인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3. 부정행위처리 규정

A.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1. 시험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3.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경우
4. 대리로 응시한 경우 (정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처리)
5. 시험 중 시험과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
6.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7.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주고 받는 경우
8. 휴대폰 등 전자 통신기기가 작동하는 경우
※ 본인의 사용의지와 관계 없어도 부정행위로 간주
9.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
10.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경우
11.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 받아 답안지 작성한 경우
12. 고사실 밖으로 문제 또는 답안을 유출, 배포하는 경우
13. 시험종료 후 채점과정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된 경우
14.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15.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16.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17. 문제지 이외에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는 경우
18.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19. 성적표를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B. 부정행위자 처리

1. 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는 한국증권인재개발원 자격검정본부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반복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성적 뿐 아니라 이전 성적도 모두 무효화하며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됩니다.

4. 취소 및 환불 규정

- 1) 접수기간 내 취소 : 해당 응시료 전액환불
- 2) 접수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 해당 응시료의 50% 금액을환불
- 3) 접수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상 취소 : 환불불가

※ 단, 계좌이체및무통장입금으로결제시,취소수수료 500원을 차감한 금액 환불

- 4)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료 전액 환불
(해당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① 우리 원 귀책사유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한 경우
- ③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본인의 백숙 부모 및 외조부 등근친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원서접수 마감 시점부터 시험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본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증빙자료 제출)
- ④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검정 실시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등 제출)

※ 아래의 경우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5) 응시에 불참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